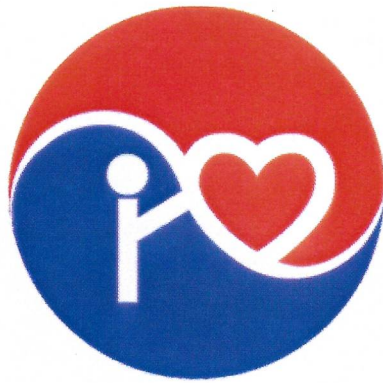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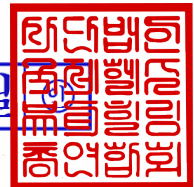


정 관



원본대조필



사단
법인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

Corporate juridical person, International Health Beauty Healing Federa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International Health Beauty Healing Federation (약칭 I.H.B.H)라 표시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민의 바른 체형관리 및 헬스, 뷰티, 힐링을 바탕으로한 체형미를 통해 범국민적 건강 활동 증진 및 국민의 건전한 체형관리를 도모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범국민적 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와 체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체형의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도하고, 전문가를 지도 양성하여 봉사 활동 통하여 국민의 진정한 건강한 아름다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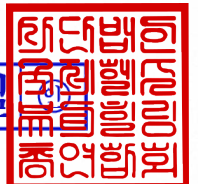
본회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86-12번지에 총회의 중앙회를 두고 하부에는 연합하는 협회들을 둘 수 있다. 총회 사무실은 행정 구역 단위별로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해외에도 협회를 설립하여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의 바른 체형관리 및 체형미 활동과 헬스뷰티힐링을 위한 운동 전개
2. 체형관리 및 헬스뷰티힐링 지도자와 기타 건강관리자들에 대한 지도자 육성 및 지도
3. 국민 체형관리를 통한 에너지테라피 힐링케어시스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보급
4. 바른 체형관리 방법과 건강한 국민생활 헬스뷰티힐링을 위한 세미나 및 경연대회 개최
5. 체형관리의 중요성 인식 증대 및 건강관리와 헬스뷰티힐링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신문발행
6. 기타 국민체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과 헬스뷰티힐링 및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7.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시니어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과 예방의학 실천을 위한 각종 시니어 체형관리 운동 프로그램과 시니어 통증예방 케어시스템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원본대조필



제5조 (법인의 공여이익)

- ①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종교 직업 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조직)

본 회의 정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체형 관리사와 헬스, 뷰티, 힐링 관련 전문인들과 그 종사자들로 조직하며 준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건강한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로 규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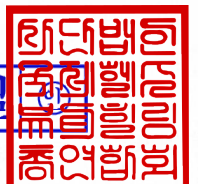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총연합회 회원은 총연합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과 금액은 세칙으로 정한다.
3. 본회의 정기 총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회원은 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시 1차 권고, 불이행 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원본대조필



제10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 상실을 한 경우에는 납부를 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총회장 1명

수석회장 1명

수석부회장 2명

이사장(설립자) 1명

이사 12명 이내(총회장, 수석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설립자) 포함)

감사 2명

2. 위촉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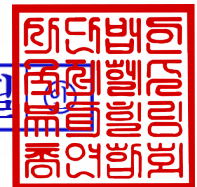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를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자문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설립자인 이사장은 총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총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의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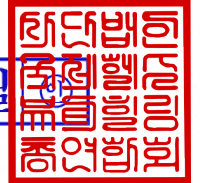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원본대조필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선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총회장 보선은 총회에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 시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수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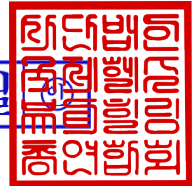
- ① 본회는 약간의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장이 위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정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

원본대조필



제20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3월 중에 총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은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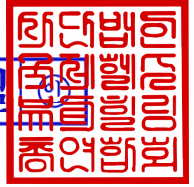
- ① 총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요구 결의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원본대조필



제23조 (의장의 표결권)

본회 총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회 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총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 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 표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급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임원의 불신임)

-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해임안은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는 즉시 해임된다.
- ④ 해임안이 결의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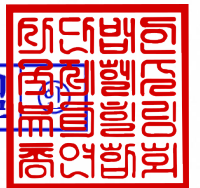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 ① 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 ② 대리인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원본대조필



제30조 (총회의결 사항 통지)

총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0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1조 (의사록)

본회는 총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참석한 총회장이 지명하는 5인의 회원 (감사1인 포함)이 연명으로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2조 (구성)

이사회는 총회장, 수석회장, 수석 부회장,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3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원본대조필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총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2인 또는 재적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총회장이 감사 또는 이사의 소집 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않을 때는 요구권자(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소집의 특례)

- ① 총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소집 개최 요구 결의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7조 (긴급 처리)

총회장은 업무 내용이 경미 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총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38조 (서면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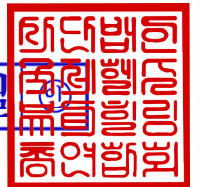
총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분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39조 (이사 회의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이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원본대조필



제40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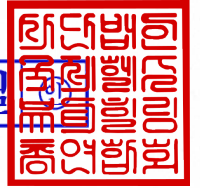
- ①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 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존
2. 차기 회계 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원본대조필



제43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 기금 등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 (주요 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산의 관리)

- ① 본회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이외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③ 본회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 ④ 본회에 발생 된 일체의 수익은 본회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⑤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 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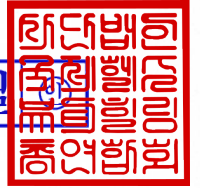
제46조 (기금 및 적립금)

- ① 본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중앙임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 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7조 (자금의 차입 등)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원본대조필



제4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제49조 (회계감사)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50조 (임원의 보수)

1.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총회장과 상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51조 (회계규정)

본회의 회계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



제52조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헬스,뷰티,힐링 체형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총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를 두며 행정구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3조 (조직)

- ①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 및 임직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에 두는 임원 및 대의원과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4조 (산하 분과 협회 회장, 지회장의 임명)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의 산하 분과 협회 회장은 당해 총연합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 총회장이 임명하며, 각 지회장은 직 상급 산하 분과 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본회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산하 분과 협회 회장의 임무)

산하 분과 협회 회장은 본회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당해 산하 분과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소관 지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56조 (직제 및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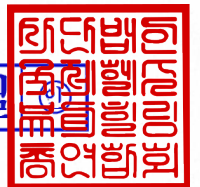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 산하 분과 협회의 세부적인 직제, 조직 및 규정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57조 (사무처)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 산하 분과 협회의 사무처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8 장 위 원 회

원본대조필



제58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 조직위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 위원회는 총무, 기획, 정책 홍보 대외 협력 등의 위원회로 그 구성과 종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기술위원회는 학술, 교육, 자격검정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교 육 연 수 원



제59조 (교육연수원의 설치 운영)

- ① 제4조 6호의 규정에 의거 체형관리 지도자와 헬스, 뷰티, 힐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하의 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원의 조직과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0조 (교육연수원장의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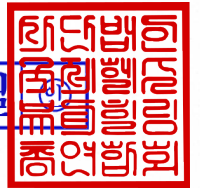
- ① 교육연수원장은 본회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교육연수원장은 본회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육원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며, 매 분기별로 교육, 연수 실적을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장 사 무 처

제61조 (사무처)

- ① 본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원본대조필



제62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3조 (직제 및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정원 및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64조 (해산)

- ①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해산하고 관할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가 있을 때 해산될 수 있다.
- ② 본회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부한다.
- ③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 결산 내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사) 국제헬스뷰티힐링 총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65조 (정관개정)

- ①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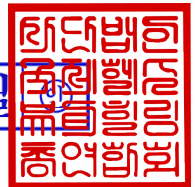
제67조 (포상 및 징계)

- ① 본회는 체형관리 및 헬스, 뷰티, 힐링 연구와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산하 분과 협회 및 시·도 지회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산하 분과 협회 및 시·도 지회와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원본대조필



제69조 (공고)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또는 정관의 개정 등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관할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9월 18 일

사단법인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

이 사 장/

총 회 장 신 현 주



수석회장 전 승 덕



수석부회장 김 채 호



수석부회장 전 미 정



이 사 장 진 선



이 사 임 병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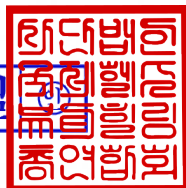
이 사 임 병 준



이 사 김 원 영



원본대조필



정관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제헬스뷰티힐링총연합회정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 ① 회비는 연회비로 준회원(일반회원)은 10만원, 정회원은 20만원, 임원은 30만원으로 한다.
- ②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인 기업회원은 입회비 300만원에 연회비는 30만원을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입회)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중앙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회원의 투표권 및 의결권에 관한 기본 조건)

- ① 회원의 투표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이상에 한하며 회비납부 1년 이상 지속한 정회원 이상에 한함.

제 5 조(회원수, 회원명부 보고 및 회비납부)

- ① 분과협회 및 지회는 분기별(연 4회) 마지막 월일까지 회원수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분과협회 및 지회는 3월과 9월 말일까지 중앙회의 소정양식에 변동사항을 수정한 회원명부를 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비는 가입과 동시에 첫 입회할 때 입회비와 함께 연회비로 선납 처리하고 매년 연회비로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선임임원 자격 및 선임)

- ① 정관 제 13 조 2항에서 총회장의 호선 자격조건은 선임임원 4년이상 등록된 자로써 수석 회장 1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정하여 총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수석회장의 호선 자격 조건은 선임임원 4년이상 등록된 자로써 수석 부회장 1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정하여 총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장이 위촉한다.
- ③ 수석 부회장의 호선 자격 조건은 선임임원 4년이상 등록된 자로써 선임임원 1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정하여 총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장이 위촉한다.
- ④ 임기 만료된 선임 임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재선임 될 수 있다.

제 7 조(정관 제18조의 명예 총재, 명예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의 예우 및 지위, 권한, 역할, 책임)

- ① 제 18 조 1항은 명예총재단과 고문단과 자문단으로 나뉘며 명예총재단의 세부호칭은 의전상 총재, 부총재로 칭하고 고문단의 세부 호칭은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칭한다. 자문단은 각 분과별 전문 자문위원과 일반 자문위원으로 칭한다.
- ② 정관 제 18조 3항에 의거하여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장과 이사장의 자문기구로써 인사관리, 예산집행, 행정업무, 의결집행 등 실질적 업무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정관 제5장 제32조에 의거하여 모든 의결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8 조(위촉 임원의 임기)

위촉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여 총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임원의 자격 상실 및 해임 조건)

- ① 임원이 해임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 ② 정관 제3장 제14조에 의거하여 위촉임원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사유 발생시 선임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이사회를 걸쳐 선임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장이 즉시 해임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선임임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아니하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을 시는 해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제 4 장 사 무 총 국

제 10 조(본회 관련 업무 서류)

- ① 본회 관련 협약, 위촉, 표창, 회원명부 그 외 본회 관련 업무 서류는 중앙회 사무총국에서 관리, 보관한다.
- ② 업무 서류의 보관 연한은 최소 5년으로 한다.

제 11 조(비밀유지의 의무)

본회로부터 습득한 모든 정보 및 업무에 관련한 사항은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분쟁)

총연합회에 관한 모든 분쟁 시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대표권 제한규정)

이사장 신현주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